

**붙임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제출 서류** **(기본) 신청 서류**

구 분		기본 서류
간이과세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
폐업자	2020. 8. 16. ~ 2021. 12. 16. 폐업	신청서, 휴폐업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2021. 12. 17 ~ 2022. 5. 31. 폐업	신청서, 휴폐업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증빙

 **(추가) 신청 서류**

구 분	추가 서류
공동대표자	위임장
대리신청자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 명의 계좌 수령자	위임장, 위·수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동의 약약서

\* 위임장은 제3호 서식(통합위임장)으로 제출

\* 신분증은 주민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제3호 서식> 통합 위임장

**통합 위임장**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b>위임사유</b>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input type="checkbox"/> 대리 신청 등(사유: _____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 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하는 자(위임자): _____ (인, 서명)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	○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받는 자(수임자) : _____ (인, 서명)			
※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호 서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 계좌	은행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압류계좌, 계좌개설 불가 등 사유에 한함		

신청서 제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약속하오니, 본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인과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자 간의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의 신청인 ( )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아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계좌번호 :
- 은행명 :
- 예금주 :
- 주민등록번호 :

2. ( )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	
구비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신청기간 안 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9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 3

###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붙임 4

##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